

OE-BS-14

오픈엣지 테크놀로지(주)

보상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2-03-31

제1조 【목 적】

이 규정은 정관 제42조 1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보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직무와 권한】

- ① 위원회는 이사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,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에 상정될 이사보수 한도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 등 등기이사 보수의 적정성을 검토, 승인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3조 【구성】

- ① 위원회 위원은 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내 이사는 제외하고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해임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④ 해임,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결원을 충원한다.

제4조 【위원장】
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5조 【소집권자 및 소집절차】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간사는 회의일 전일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한다.
- ③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 【결의방법】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 【부의사항】

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연간 등기임원 보수 한도 승인 및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
 - (2) 등기 이사의 개별 보수(성과급 포함)

제8조 【관계인의 의견청취】
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9조 【의사록】

-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0조 【간사】

-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11조 【규정의 개정】

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